

홀트장학사업지침

2017. 1.

홀 트 아 동 복 지 회

홀트장학사업지침

1. 목적

- 홀트아동복지회 장학사업은 설립자 홀트씨 부부의 정신을 기려 나눔과 봉사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대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평소 학과 생활이 모범적이고, 자원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며, 자기개발 등 재능이 다양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습의 지속 돕고, 전국단위 장학사업의 시행으로 홀트 장학생 서포터즈의 역할을 성실히 하도록 한다.

2. 사업내용

가. 장학금명 : 홀트 장학금

나. 지급액 및 지급시기

- 1년 6,000,000원 (학기당 지급액 300만원)
- 단, 금액은 상·하반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다. 지급기간

-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라. 지급방법

- 장학금은 소속 학교장(총장)에게 지급하거나 본회에서 직접 장학생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상기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은 즉시 장학금 지급확인서 (본회 소정양식)를 본회에 제출한다.

3. 지원자격 및 의무

- 홀트 장학생은 다음의 공통사항을 갖춘 학생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

는 학생들을 선발한다.

가. 공통사항

- 봉사과 나눔의 정신을 삶 속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생.
- 높은 도전의식으로 새로운 사회복지현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학생.
-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.
-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.
-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: 15학점
- 교내·외 장학금 받고 있지 않은 학생.

※단, 장학금 총액이 한 학기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

- 직전학기 VMS 등록 봉사활동 최저 20시간 이상 학생

나. 신청자격

홀트 장학금

- 학과 구분 없이 공통사항의 요건을 충족하며,
- 전국의 4년제 대학 3학년생을 선발한다.
- ※ 당해 연도 최우수 장학생을 1명 선발하여 4학년까지 지급함
- 직전 정규학기 대학성적 기준 : 3.5이상/4.5만점, 3.3이상/4.3만점

다. 홀트 장학생의 의무

- 홀트 장학생은 본 장학지침에 동의하여야 한다.
- 본 회가 실시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본 회의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홀트 서포터즈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.
- 모금 및 홍보활동, 상·하반기 2회
- 본 회 관련기관 자원봉사자로 등록, 참여(학기 별 20시간이상)
- 장학생을 위한 캠프행사를 본회에서 주관할 경우 참석해야 한다.

4. 선발인원

구분	선발인원 (최대, 명)	연간 지급 한도액
홀트 장학금	10	600만원 (등록금 범위 내) (학기당 지급액 300만원)
계	10	-

5. 선발 절차

- 본회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. 특별한 사유로 본회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별도 심사하여 선발한다. 심사는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심사 실시 후 개별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○ 평가방법 및 배점

단계	평가항목		배 점
1단계	적격여부 심사		-
2단계	성적심사 -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(100%)		30
	봉사활동시간 심사 - 직전학기 VMS 실적에 한함, 총 시간 합	100시간 이상	30
		80시간 이상	25
		60시간 이상	20
		40시간 이상	15
		20시간 이상	10
	봉사활동 에세이		20
	자기소개서		20
3단계	종합심사		-

6.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

- 대학별 담당자가 공문 및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발송

제출 서류 (각 1부)	신청자 공 통	1. 장학생 신청서 · 지도교수 추천서 · 자기소개서 · 서약서 ·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(소정양식) 2. 직전학기 대학 성적증명서 3. 재학증명서 1부(학교 소정양식) 4. 주민등록 등본 5. 신분증 6. 봉사활동시간 증명서(2016년 2학기 VMS) 7. 봉사활동 에세이 (A4 3장 이상) 8. 학교 통장 사본 1부(장학금 입금계좌)
비 고		1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. 서류 지연도착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

7. 지급정지사항

- 가.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.
- 나. 휴학, 질병, 입영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.
- 다. 홀트의 장학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.
- 라. 장학금 중복수여(타 장학금 학기당 250만원 초과)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.
(지급정지사유 발생시, 소속 학교장은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)
- 마. 장학생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.

8. 사후관리

- 가. 장학증서 수여식
재단의 설립이념과 장학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시키고, 본회의 장학생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.
- 나. 홀트 서포터즈 운영
홀트 장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, 서포터즈 운영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